

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방식 및 내용이 피의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백 윤 석
대전지방경찰청

이 미 선[†]
동양대학교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는 피의자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규정이다. 본 연구는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 방식 및 내용이 일반인들의 피의자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1에서는 3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포함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일체의 진술', '변호인 조력' 등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에서는 157명의 19세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 내용(현행 고지문/수정 고지문)과 고지 방식(구두제시/서면제시/구두서면 동시제시)이 다른 6개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으로 피의자 권리를 제시한 후 권리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현행 고지문은 현행 법령에 의해 피의자 수사 면담 시 사용되고 있는 권리고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수정고지문은 연구1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현행 고지문을 제시하였을 때보다 수정된 고지문을 제시하였을 때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리고지 방식에 따른 피의자 신문 전 권리 이해도의 차이는 없었다.

주요어 : 피의자신문, 미란다원칙, 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권리고지방식

[†] 교신저자 : 이미선, 동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E-mail: msy23@dyu.ac.kr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가리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국가 권력인 수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의자는 종종 자기 방어에 필요한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피의자의 자기 방어에 필요한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피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예: 헌법 제12조 제5항 1문, 헌법 제12조제5항 2문, 형소법 제200조의6, 헌법 제12조 제6항, 형소법 제200조의6, 형소법 제200조의4 제 5항).

‘미란다 원칙’으로 알려진 피의자의 체포, 구속 또는 신문 전 권리고지 절차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Miranda V. Arizona, 1966)에 의해 확립된 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피의자 권리고지의 적법 절차이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법집행기관은 피의자신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고지한다. (1) 형사피의자,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어떠한 진술도 형사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형사피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신문 시 변호인 임회권을 갖는다. (4)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경제적 빈곤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조국, 1997).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 권리고지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단계에서의 권리고지(형소법 제200조의5, 제201조의2 제10항, 제209조, 제213조의2)와 피의자 신문 전의 권리고지(형소법 제244조의3)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통

상 미란다 원칙으로 알려진 피의자 권리고지는 피의자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면(형사소송법 법률 제8496호, 2008, 제200조의5), 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 규정은 체포 후 피의자가 신문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를 받는 것이다(형사소송법 법률 제8496호, 2008, 제244조의3).

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는 조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국의 미란다 경고와는 달리 제244조3이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 요구 강화 측면에서 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되었다. 피의자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권적 이념,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과 각종 기본법을 통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절차 상 피의자 신문의 적법 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신동운, 2012). 다만, 개정된 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규정이 과거 법률에 비해 보장되었다고 해서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확실할 수는 없다. 특히, 피의자 권리고지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권리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고지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피의자 권리 고지의 내용과 방식이 피

의자의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권리고지에 대한 이해도

외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권리고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문이 법률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이해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Grisso, 1998; Goldstein, Zell & Grisso, 2011; Goldstein, Zelle & Grisso, 2014; Rogers, Rogstad, Grillard, Drogin, Blackwood & Shuman, 2010). Rogers 등(2010)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란다 원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란다 퀴즈(Miranda Quiz)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략 30%의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과 같은 일부 난해한 단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역시 미란다 권리의 이해도에 있어서 피고인과 차이가 없어, 피고인과 대학생 모두 미란다 권리의 상당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et. al., 2010).

국내에서 피의자 권리고지와 관련된 연구는 그 수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나, 국외에서 실시된 연구와 유사하게 취약한 계층의 피의자는 피의자 권리고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준호(2006)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의자 권리고지에 대한 이해도 연구를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소년범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피의자 권리 이해도 점수가 더 낮았으며, 범죄 사실에 관한 고지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지와 피세영(2014)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사용된 단어, 표현, 고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 권리 고지 사항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의 고지 사항이 구분되지 않았거나(김민지, 피세영, 2014), 진술거부권 등 고지 사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권리고지 내용을 적용한 연구(차준호, 2006)였다는 제약점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해도 피의자 권리 고지 이해도 연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존 국내의 실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피의자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수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 전 피의자 권리 고지문은 일상용어가 아닌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권리 고지 내용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김상훈, 2015), 추상적이거나 난해한 단어들인 권리 고지문에 포함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민지,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현재 형사사법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 전 권리 고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고지문의 단어와 표현 수정 및 부연 설명 추가 시 일반인들의 피의자 권리 고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권리고지 방식

피의자 권리고지 내용과 더불어, 형사사법 절차 상 신문의 적법절차 원리 시행 및 피의자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의자 권리고지 방식이다. 기존 연구 결과는 자극 제시 방법이 제시된 자극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Montali와 Lewandowski(1996)는 시각, 청각, 시각과 청각의 이중 양식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 참가자들의 내용 이해 정도를 측정된 결과, 시각과 청각 조건에 비해 이중 양식 조건의 참가자들이 내용 이해에 좋은 수행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사관들이 권리 고지문을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특정 부분을 누락시킬 수 있으며, 소년범의 경우 구두 고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Wrightsmann & Pitman, 2010).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결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은 권리고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리 고지문을 너무 빨리 읽거나,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신의기, 강은영, 2002).

Hughes, Bainm, Gilchrist와 Boyle(2013)은 영국 스코트랜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권리 고지 방식에 따른 이해도 차이를 연구하였다. 참가자들은 고확력 집단과 저확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지 방식은 구두(Verbal), 서면(Written),

구두와 서면(Verbal & Written)의 3가지 제시 방법 중 한 가지로 권리 고지문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구두로 권리 고지 받은 집단은 서면 또는 구두와 서면 동시 제시받은 집단과 비교하여 이해도가 낮았다. Hughes 등(2013)의 연구는 피의자 권리 고지 시 단순히 구두 고지하기보다는 서면 또는 서면과 구두 동시 고지하는 것이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상훈(2015)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권리 고지문 제시 방법에 따른 피해자들의 권리 이해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권리 고지문을 서면 또는 서면과 구두 동시 제시한 결과, 서면 고지만 했을 때보다 서면과 구두 설명 동시 고지 시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상훈(2015)의 연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만으로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효율적인 제시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 수사면담 시 피의자 권리 고지문 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피의자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 방식에 따라 권리 고지문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고지사항 내용 및 방식이 피의자의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은 두 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현행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어휘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 고지문 내용 중 이해 수준이 낮은 개념에 대해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권리 고지문을 수정한 후, 현행 권리고지문과 비교하여 이해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고지 방식에 따른 권리고지문 이해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행 또는 수정 고지문에 대해 구두, 서면, 구두와 서면 동시 제시 하여,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시방법은 구두로 제시할 때 보다 서면 또는 구두와 서면으로 동시에 제시하였을 때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며, 제시 방법에 따른 효과는 현행 고지문 보다 수정 고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1

연구대상

총 50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춘천소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제시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았다. 응답자 중 기존에 피의자 권리고지를 학습한 경험이 있었던 참가자 수는 19명(38%), 학습경험이 없는 참가자는 31명(62%)이었다. 따라서 학습 경험이 있던 19명을 제외한 31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남성은 8명(25.8%), 여성 23명(74.2%)이었

으며, 연령은 만 18세에서 25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0.61세(표준편차 = 1.84)이었다.

연구 방법 및 절차

현행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포함된 법률 용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휘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사 실무상 사용되는 피의자 권리 고지문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제공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상에 규정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권리를 고지하는데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명시된 4개의 항목에 대하여 수정 또는 부연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표 3 참고).

어휘 이해도 검사는 신문 전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미란다 경고의 어휘를 측정하기 위한 이해도 검사(CMV, CMV-2) (Grisso, 1998, 2014)와 한국형 피의자 권리 어휘 이해도 검사(K-CMV) (차준호, 2006)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다만 기존 어휘 검사(Grisso, 1998, 2014; 차준호, 2006)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단어에 대한 이해도에서 확장된 의미 상 연결되는 두 단어 이상의 문구 또는 문장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는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4개 항목에 포함된 10개의 법률적 용어의 의미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표 1 참고).

어휘 이해도 검사에 대한 평가는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개념이나 법률적 용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고려하였다.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은 연구자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정답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연구

자간 판단이 다른 경우, 한 명의 법학 교수 및 두 명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후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결과

대학생들의 현행 신문 전 피의자 권리 고지의 어휘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변호인 조력', '일체의 진술', '개개의 진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 '변호인 참여' 등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일체(一切)'의 경우 '모두', '개개(箇箇)'는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한자어로 전체 참가자 중 각각 32.3%, 22.6%가 해당 단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체의 진술'의 경우 '하나의 질문'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개개'의 경우 '모든 질문', '여러 가지 말들' 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체' 또는 '개개'의 경우, 법률적인 용어이거나, 어휘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한자어가 익숙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응답자 중 한 명은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의미를 애매하게 이야기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범죄 혐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를 유죄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불이익에 대하여 '가혹행위', '신체적 폭력, 강압수사', '신체, 정신적 손상'으로 한정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면, '신문', '변호인 참여', '변호인 조력' 등과 같이 법률적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였다.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따라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언급한 '구속' 또는 '공격'과는 차이가 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피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이 출석하여 수사과정 상 위법성 감시,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 제공 및 의견 제공을 의미한다(신동운, 2014; 이영돈 2014 재인용). '변호인의 조력'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의 범위와 역할 등은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이영돈, 2014),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나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강병훈, 2009).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도착한 이후부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과정 중 언제든지 변호인의 법률적인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22.7%는 '변호인 참여'에 대하여 '법정에 함께 가는 것'과 같이 변호인 참여 범위를 수사과정이 아닌 재판과정으로 국한시키거나, 또는 '대신 답해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변호인 조력'의 경우 가장 낮은 정확률을 보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48.9%가 '대신 답해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표 1. 현행 권리 고지문 어휘에 대한 이해

용어	오답 예시	정답률
1호.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일체의 진술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단 한마디의 말, 말하는 것, 사건과 관련된 질문의 답, 말하는 것, 하나의 진술, 같은 맥락이 진술, 한 가지 진실한 답,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는 것, 사건의 내용, 피의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내용, 물음에 답하는 것, 어떤 일, 사건에 대한 사실, 피의자의 답변, 전반적인 질문한 것, 피의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진술.	67.7% (n = 21)
(2) 개개의 질문	변호사나 판사가 묻는 말, 여러 가지 말들, 수사관이 질문하는 것, 모든 질문, 모든 신문 내용,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 세부적인 질문,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궁금한 점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 수사관이 사건 혹은 피의자에게 묻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 자세한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	77.4% (n = 24)
(3)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대로 진술을 안 해도 거짓을 하거나 애매한 답을 해도 된다.	96.8% (n = 30)
2호.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합니다.		
(4)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는다. 유죄로 결론 내려져 상부에 송치되지 않는다. 폭력 강압적 수사 등을 당하지 않는다. 처벌 신체 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는다.	83.9% (n = 26)
3호.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진술거부	진실 된 답을 하지 않는 것. 진실된 답을 피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 신문에 응하지 않는 것.	93.5% (n = 29)
(6)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	진술을 하지 않는 행동, 법적인 역할을 벗어나 만들어 낸 답, 나에게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말하는 것, 자신의 진술에 대한 답을 이체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것,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	83.9% (n = 26)
(7) 유죄의 증거	내 진술로 생긴 증언,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죄가 밝혀지고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판결에 영향을 미침.	90.3% (n = 28)
4호.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문을 받을 때	어려운 질문, 권위자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따질 때, 신문 과정, 구속되어 수사 받을 때.	90.3% (n = 28)
(9) 변호인 참여	변호사가 같이 있고 나를 대신에서 말할 수 있음, 재판과정에서 개입하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과 범정에 함께 가는 것, 변호사가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나를 도와주는 것, 대신 대답,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 나를 대신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참여, 재판에 피고인 대신 변호해주는 변호인을 부를 수 있다.	77.4% (n = 24)
(10) 변호인 조력	내가 불리할 것 같을 때 변호인이 대신 대답해 주는 것, 수사관의 질문에 대신 대답하거나 변호인의 말을 참고하여 답할 수 있다. 입증하는 것을 돕거나 나의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 대신 답변, 대신 진술함, 법정에서 말을 못하는 상황일 때 나를 도와주는 것, 대신 말해주는 사람의 도움, 재판을 이기는 목적을 취하는 것, 죄가 없다고 하는 증거.	61.2% (n = 19)

주. 권리 고지문의 정답 예시는 수정된 권리고지문(표 3) 참고.

연구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 방식과 내용에 따른 권리 이해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실험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총17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동영상 재생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소음 등으로 인해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실험 참여 환경 및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응답자 19명을 제외한 총158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 74명(46.8%), 여성 84명(53.2%)이었다. 연령은 20대 29명(18.4%), 30대 72명(45.6%), 40대 48명(30.4%), 50대 8명(5.1%)

표 2.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 및 권리고지 학습경험

		명	(%)
성별	남	74	(46.8)
	여	84	(53.2)
연령	20대	29	(18.4)
	30대	72	(45.6)
	40대	48	(30.4)
	50대	8	(5.1)
교육	무학	0	(0.0)
	초등학교	0	(0.0)
	중학교	0	(0.0)
	고등학교	21	(13.3)
	대학교	122	(77.2)
	대학원	15	(9.5)
학습경험	있다	51	(32.2)
	없다	107	(67.7)

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명(13.3%), 대학교 졸업 이하 122명(77.2%), 대학원 졸업 이하 15명(9.5%)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피의자 권리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51명(32.3%), 학습 경험이 없는 참가자가 107명(67.7%)이었다.

연구방법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따라 권리 고지문 이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피의자 권리 고지문 및 이해도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참가자를 모집하여 제시방법(구두/서면/구두 서면 동시)과 제시 내용(현행 권리 고지문/수정된 권리 고지문)에 따라 6개의 조건으로 권리 고지문을 제시한 후, 조건에 따른 권리 고지문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피의자 권리 고지문

현재 실무상 사용되는 피의자 권리고지문과 수정된 고지문의 이해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권리 고지문이 작성되었다. 현행 피의자 권리고지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KICS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수정된 고지문은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고지문의 권리 4개 항목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원래 고지문의 권리 취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장은 가능한 쉽고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수정 고지문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법학 교수 1명과 법률전문가 2명이 검토하여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 및 수정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표 3. 피의자 권리 고지문

	현행 권리 고지문	수정 권리 고지문
1호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거나 중간에 언제든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호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합니다.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합니다. 즉, 당신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 대한 범죄 혐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3호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경찰관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한 전부 또는 일부는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술을 반복하는 진술은 가능하지만 이미 진술한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호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도착한 이후부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과정 중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조언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도 측정 설문지

피의자의 권리 고지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해도 검사지가 제작되었다. 이해도 측정 설문지는 차준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피의자 권리 이해도 검사(K-CMR-R)와 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struments(MRCI) (Goldstein, Zell & Grisso, 2014)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추가적으로 2007년 6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 고지 4개 항목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해도 검사지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진술거부권에 대한 문항 11개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문항 4개로 구성되어있다. 이해도 검사지의 문항 및 내적 일치도 수준은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지의 내용이 현행 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도 측정 문항들은 총 3명의 법학교수 및 법률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논의에 의해 수정되었다.

표 4. 이해도 검사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문 항	α
1. 당신이 일단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게 되면 중간에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682
2. 당신이 진술거부권을 길게 사용할수록 경찰은 당신에게 더 부정적인 혐의를 갖게 될 것이다.	.669
3. 당신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수사관의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이 직접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인이 대신 대답해 줄 수도 있다.	.668
4. 당신이 사실대로 솔직히 진술하기만 하면 그 부분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677
5. 당신이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대해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66
6. 당신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더라도 어떤 진술을 하기 전에 매번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듣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676
7. 당신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676
8. 당신이 수사관의 질문을 대해 대답을 한다면, 대답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모두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669
9. 당신이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수사관은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695
10. 당신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692
11. 당신이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무 불이익 없이 그 진술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	.664
12. 당신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일부만 대답을 하였다면 그 정보만으로는 당신에게 불리해지지 않는다.	.703
13. 당신에게 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변호인과 개인적으로 의논하는 것은 어렵다.	.701
14. 당신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내용 전부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695
15. 당신이 수사관의 어떤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경우, 향후 법원에서 그 부분을 당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690

α 값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를 의미함. 3, 6, 9, 13문항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항임.

* 표시된 문항은 '그렇다', 그 외 문항은 '아니다'가 정답임.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689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12번 문항과 13번 문항을 제외했을 때 신뢰도는 각각 .703과, .701로 상승하였다. 다만 두 문항 역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연구에서는 두 문항을 제외하지 않았다.

반면, 9번 문항의 경우, 변호인 접견 참여 등 규칙 제8조 2항,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문항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 질문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검사가 실시된 이후 9번 문항은 이해도 총점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Google Forms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실험 참가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발송하였으며, 실험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는 개인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안내문에 포함된 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속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가 안내문은 총 6개가 제작되었다. 안내문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으나, 6개의 다른 조건의 실험환경으로 조성된 6개의 다른 사이트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실험 참가자들은 제시받은 안내문에 따라 6개의 조건 중 한 조건에 할당되었다. 다만 실험 참여 안내문 게시 또는 발송은 무선할당 방식으로 특정 조건의 참가자들이 한 조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실험참여 여부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실험 참여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

실험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참가자 안내 및 실험 환경 조성단계이다. 참가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연구 소개 및 참가 동의 여부 확인, 연구 참여 시 유의점에 대해 안내 받았다. 온라인 실험은 다양한 연령 및 학력의 사람들을 대상

으로 공간적인 제약 없이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나,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재생 기기의 품질 및 환경에 따라 이해도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여하기 이전에 적합한 실험 환경을 조성 실시하였다. 우선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재생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충분한 볼륨을 설정하거나 이어폰 내지 헤드셋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집중하여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한 소음이 적은 적절한 장소에서 연구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실험 진행에 앞서 영상 및 음성 확인을 위해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영상을 약 1분 간 시청하도록 한 후 동영상 재생 상태에 대해 참가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만일, 동영상 재생에 문제가 있거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또는 소음 등으로 인해 동영상 시청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경우 해당 자료는 결과 분석 시 제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의자 권리고지문의 내용(현행 권리 고지문/수정 권리 고지문)과 제시방법(구두제시/서면제시/구두와 서면 동시제시)에 따른 총 6개의 조건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 현행 고지문 또는 수정된 권리 고지문을 녹음하여 오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였다. 현행 권리 고지문과 수정된 권리 고지문 모두 표준말을 사용하는 30대 남성 경찰관에 의해 녹음되었다.

현행 고지문의 경우, 4개의 문항에 대해 각각 15초 소요되었으며, 전체 오디오 클립의 길이는 60초이었다. 반면, 수정된 내용의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경우 내용 분량이 원래 피

의자 권리 고지문에 비해 2배 정도 더 길었다 (표 3참고). 따라서 각 문항별로 30초 소요되었으며 총 120초 분량으로 완성되었다. 음성 노출 시간의 차이가 고지문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험에서는 현행 고지문의 경우 2회 반복하여 두 조건 간 음성노출 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서면 제시의 경우, 현행 고지문 또는 수정 고지문의 4개 항목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현행 고지문과 수정 고지문은 구두제시와 동일하게 30초 간격으로 제시되어 총 120초간 현출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면과 구두 동시 제시 자극의 경우, 오디오 클립과 영상 화면이 동시에 제시되었으며, 현출된 시간은 다른 조건과 동일하게 총 120초이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이해도 검사 및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이해도 검사는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고). 다만 결과 분석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고려된 9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14점을 기준으로 이해도 검사 결과를 총점을 계산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해도 검사의 문항을 읽고 고지된 피의자 권리에 일치하는 경우 '그렇다', 일치하지 않은 경우 '아니다'에 표시 하였다. 이후 참가들은 연령, 성별, 학력 및 기존 피의자 권리고지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고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실험이 종료되었다.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이전 학습경험에 따른 이해도

남성 참가자들의 피의자 권리 이해도 점수

는 평균 8.99(표준편차 = 2.78), 여성의 경우 평균 10.20(표준편차 = 2.51)으로, 여성의 피의자 권리 이해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6) = 3.57, d = -.54, p < .001$. 교육 수준에 따른 이해도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평균 8.05(표준편차 = 3.39), 대학교 졸업 이하 9.89(표준편차 = 2.61), 대학원 졸업 이하 10.40(표준편차 = 2.26)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참가자 보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이하의 교육을 받은 참가자의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t(2, 155) = 4.54, \eta_p^2 = .56, p = .012$.

학습경험이 있는 집단(평균 = 10.46, 표준편차 = 2.63) 학습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 9.35, 표준편차 = 2.75)에 비해 평균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t(155) = -2.396, p = .018$), 연령에 따른 이해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20대 이해도 평균 = 9.62, 표준편차 = 2.76; 30대 이해도 평균 = 10.19, 표준편차 = 2.69; 40대 이해도 평균 = 9.25, 표준편차 = 2.48; 50대 이상 이해도 평균 = 8.25, 표준편차 = 4.13, $t(3, 155) = 1.982, \eta_p^2 = .037, p = .119$).

성별, 학력, 학습 경험은 고지문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변인들이 권리고지 내용 및 제시방법에 따른 이해도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6개의 조건 간 성별, 학력, 이전 학습경험의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학력, 학습 경험은 조건 별 무선으로 분포되어 있었다(성별 $\chi^2 = 9.549, p = .089$; 교육수준 $\chi^2 = 32.737, p = .084$; 학습경험 $\chi^2 = 14.446, p = .492$).

권리고지 내용과 고지 방식에 따른 권리 이해도

피의자 신문 전 권리 고지 방식과 내용이 권리고지문의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수준과 성별, 기존 학습경험을 공변량으로 설정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정된 내용의 피의자 권리 고지를 받은 집단의 이해도 총점 평균은 10.76점(표준편차 = 2.82), 현행 피의자 권리 고지를 받은 집단의 이해도 총점 평균은 8.73점(표준편차 = 2.32)으로 두 집단 간 이해도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t(1, 150) = 18.206$, $n_p^2 = .110$, $p < .001$ (표 5, 6 참고).

반면, 고지방식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구두제시, 서면제시, 구두와 서면 동시제시에 따른 이해도 점수는 순서대로 각각 10.87점(표준편차 = 2.78), 10.96점(표준편차 = 2.91), 10.48점(표준편차 = 2.85)으로 고지 방식에 따른 이해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

표 5. 고지내용과 방식에 따른 피의자 권리 이해도

		<i>M (SD)</i>	
현행 고지문	구두 (<i>n</i> = 24)	8.21	(2.65)
	서면 (<i>n</i> = 31)	8.68	(2.51)
	동시 (<i>n</i> = 27)	9.25	(1.65)
	총계 (<i>n</i> = 82)	8.73	(2.32)
수정 고지문	구두 (<i>n</i> = 23)	10.87	(2.78)
	서면 (<i>n</i> = 25)	10.96	(2.91)
	동시 (<i>n</i> = 27)	10.48	(2.85)
	총계 (<i>n</i> = 76)	10.76	(2.82)
총계	구두 (<i>n</i> = 47)	9.51	(3.01)
	서면 (<i>n</i> = 56)	9.70	(2.90)
	동시 (<i>n</i> = 54)	9.87	(2.38)
	총계 (<i>n</i> = 157)	9.70	(2.76)

표 6. 독립변인 간 효과 검증

	<i>df</i>	<i>f</i>	n_p^2	<i>p</i>
내용(현행/수정)	1	18.206	.110	.000
방식(구두/서면/구두서면)	2	.692	.502	.009
내용x방식	2	.245	.003	.783

지 않았다(표 5, 6. 참고). 또한 고지내용과 고지방식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표 6. 참고).

논 의

피의자 신문 전 피의자의 권리고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최적화된 권리고지 내용 및 방식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전 피의자 권리고지문의 이해도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된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현행 또는 수정 권리고지문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 권리 고지 이해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현재 우리나라 현행 고지문의 내용 중 ‘변호인 참여’ 또는 ‘변호인 조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특히 변호인 조력(Right to counsel)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기존 연구(김민지, 피세영, 2014; 차준호 2006)에서도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 실시된 미란다 원칙에 대한 이해도 판단에 있어서도 변

호인 조력을 오해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et al., 2010). 변호인 조력은 변호인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의 범위와 역할 등은 현재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이영돈, 2014). 변호인 조력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실제 피의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 한자어의 경우 법률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권리고지문의 경우 용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실제로 현행 고지문의 내용에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표현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을 때,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법률용어 그대로 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를 하였을 때 보다 수정된 표현으로 고지하였을 때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김민지, 피세영, 2014; 차준호, 200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된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필요성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권리 고지를 구두로만 하였을 때보다 서면 또는 구두와 서면으로 동시에 고지하였을 때 권리고지의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권리고지 방식에 따른 이해도의 차이는 권리고지 내용이 수정된 표현으로 되었을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기존연구에선 구두로만 권리고지를 받은 집단에 비해 서면 또는 서면과 구두를 동시에 제시받은 집단의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Hughes et al., 2013; 김상훈,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자 총 158명 중 86.7%에 해당하는 137명이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였던 점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리고지의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고려할 때, 학력수준은 고지 방식의 영향을 상쇄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권리고지문은 온라인을 통해 화면 또는 녹음된 파일로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 방법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권리 고지문 제시 방법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지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험에 참여하였다. 비록 참가자들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피의자 권리 고지 동영상 또는 화면이 자동으로 재생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 따라 다른 실험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절차적 문제는 제시방법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반복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첫 번째 연구에서 현행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이 대부분으로 실제 일반인의 이해도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2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해도가 높았으며, 학력수준 역시 권리 고지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권리고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 일반인들의 이해도는 더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표집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의자신문 전 권리를 동영상 재생을 통해 고지한 것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비록, 피의자 권리고지를 동영상 형태로 자동 재생하는 방식을 통해 목소리의 변화, 읽기의 속도 등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제거하였으나 실제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가 동영상으로 권리고지를 받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고지 시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오프라인 상에서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실험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지라도, 오프라인 실험에 비해 예상하지 못한 가의 변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적절한 실험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실험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참가자 개인에 따른 실험 환경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대해 무선 할당되었으며, 분석 결과에서도 참가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 특성이 특정한 조건에만 분포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실험은 제시 방식에 따른 이해도 차이

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는 좀 더 통제된 실험 연구를 통해 제시 방식에 따른 이해도 차이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가자를 일반 성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다. 따라서 향후 피의자의 성별, 나이, 학력 수준 등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피의자 권리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선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이 요구되는데, 현재 피의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보다 취약한 계층까지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확장하여 폭 넓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피의자의 권리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도 함께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지 못했다. 후속연구는 수정 고지문의 세부적인 수준에 따라 이해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병훈 (200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

- 사소송이론과 실무, 201-230
- 김민지, 피세영 (2014).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23-46.
- 김상훈, 박노섭 (2015).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방식과 이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3(1), 117-141.
- 신동운 (2014). *신형사소송법찰법 제5판*. 서울: 법문사.
- 이영돈 (20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47, 261-282.
- 조 국 (1997). 미란다 규칙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10권, 409-427.
- 차준호 (2006). 국내 피의자 권리 고지 실태 및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피의자 고지 이해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risso, T. (1981). *Juvenile's waiver of right: Legal and psychological competence*. New York: Plenum Press.
- Grisso, T. (1998). Assessing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Miranda rights: Manual and material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 Goldstein, N. E. S., Zelle, H., & Grisso, T. (2014). *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struments (MRCITM)*.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Goldstein, N. E. S., Zelle, H., & Grisso, T. (2011). *Miranda Rights Comprehension Instruments (MRCI) Manua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Hughes, M., Bain, S. A., Gilchrist, E., & Boyle, J. (2013). Does providing a written version of the police caution improve comprehens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logy, Crime & Law*, 19(7), 549-564.
- Montali, J., & Lewandowski, L. (1996). Bimodal reading: Benefits of a talking computer for average and less skilled reader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9(3), 271-279.
- Rogers, R., Rogstad, J. E., Gillard, N. D., Drogin, E. Y., Blackwood, H. L., & Shuman, D. W. (2010). "EVERYONE KNOWS THEIR MIRANDA RIGHTS": Implicit Assumptions and Countervailing Evid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6(3), 300-318.
- Wrightsman, L. S., & Pitman, M. L. (2010). *The Miranda ruling: Its past, present, and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19. 06. 01.

심사통과접수 : 2019. 07. 11.

최종원고접수 : 2019. 07. 16.

The Effect of Contents and Methods of Pre-Interrogation Rights Notification on Understanding of the Suspect's Rights

Yun Seok Back

Daej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Mi Sun Yi

Dongyang University

Pre-Interrogation notification of suspect rights refers the provisions on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 and assistance from attorneys before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tents and methods of pre-interrogation rights notification on understanding of the suspect's rights. Study 1 examined the words and concepts in the current notification of suspects rights with 31 college students and found that their understanding was low in terms including "whole statements", "Assistance from attorneys" ect. Study 2 presented one of six conditions of different content(current notificiation/revised notificiation) and methods (oral/written/both) of pre-interrogation notification of suspect rights to 157 participants aged 19 or older and assessed their understanding of suspect rights. The current notification was the rights notification itself used in the investation and interview of suptes 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revised notification added explanations about legal terms of the current Criminal Orocedre Code and rivised them in easier expres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Study 1.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nts had a significantly higher understading of suspects rights when provided with the revised notification than the current one. There wrer 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understadning of suspects rights before interrogations aorcding to the mthods of presenting.

Key words : *suspects'right, right notice, miranda warning, pre-interrogation rights notification*